

의안번호	제2657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3. 8. 25.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정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7
----------	------

발의연월일: 2023. 8. 25.

발 의 자: 우정욱, 김원순, 김석한,
최두임, 이정숙 의원(5인)

1. 제정이유

고성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부정한 방법의 피해지원금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29호

- 예고기간: 2023. 8. 29.(화) ~ 2023. 9. 4.(월) [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법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피해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성군 내 임시거처 제공
2. 주택복구비
3. 그 밖에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는 1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군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군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20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피해군민 및 해당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의 환수) 피해군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피해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1.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유선전화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내용				담당공무원 확인(란)
화재발생 일시				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
화재발생 장소				
피해내역	① 공부상면적 [] m ² , ② 소실면적 [] m ² , [] % ③ 피해금액 [] 원, ④ 기타:			
※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3.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임시거처 제공 <input type="checkbox"/> 주택복구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확인사항	※ 선택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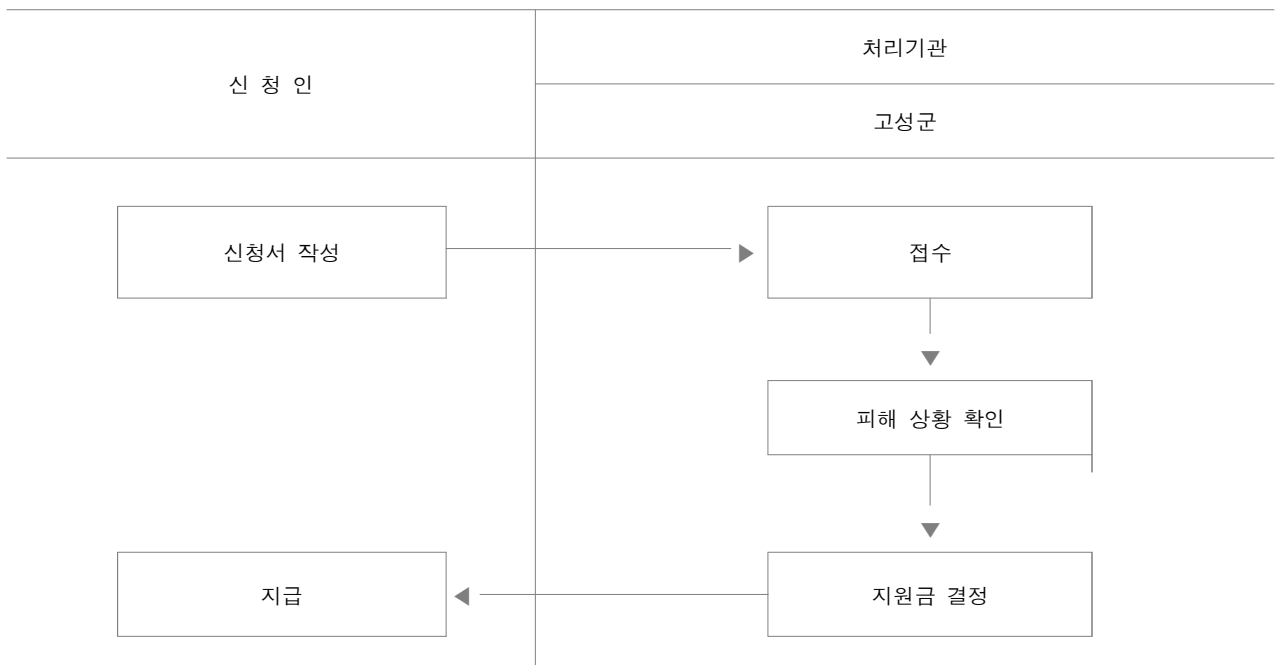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이 건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수 및 읍·면장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액 산정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 나.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 다.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 라.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1. 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

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